

공공·민간재개발사업(3개소)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인 공공·민간재개발사업(3개소)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월 9일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면적(m ²)	비고
1	면목7동 527번지 일원	47,780	가칭)면목동 527일대 공공재개발사업
2	망우본동 461번지 일원	49,586.19	가칭)상봉13구역 민간재개발사업
3	면목5동 172-1번지 일원	47,794.22	가칭)면목동 172-1일대 민간재개발사업

2. 제한사유
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나.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공공·민간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

3. 제한대상 행위

- 가. 건축물의 건축
- 1)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 - 2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- 3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
 - 4) 「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- 5) 「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분할 등
 - 6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 - 7)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※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은 적용 제외
- 나. 토지분할

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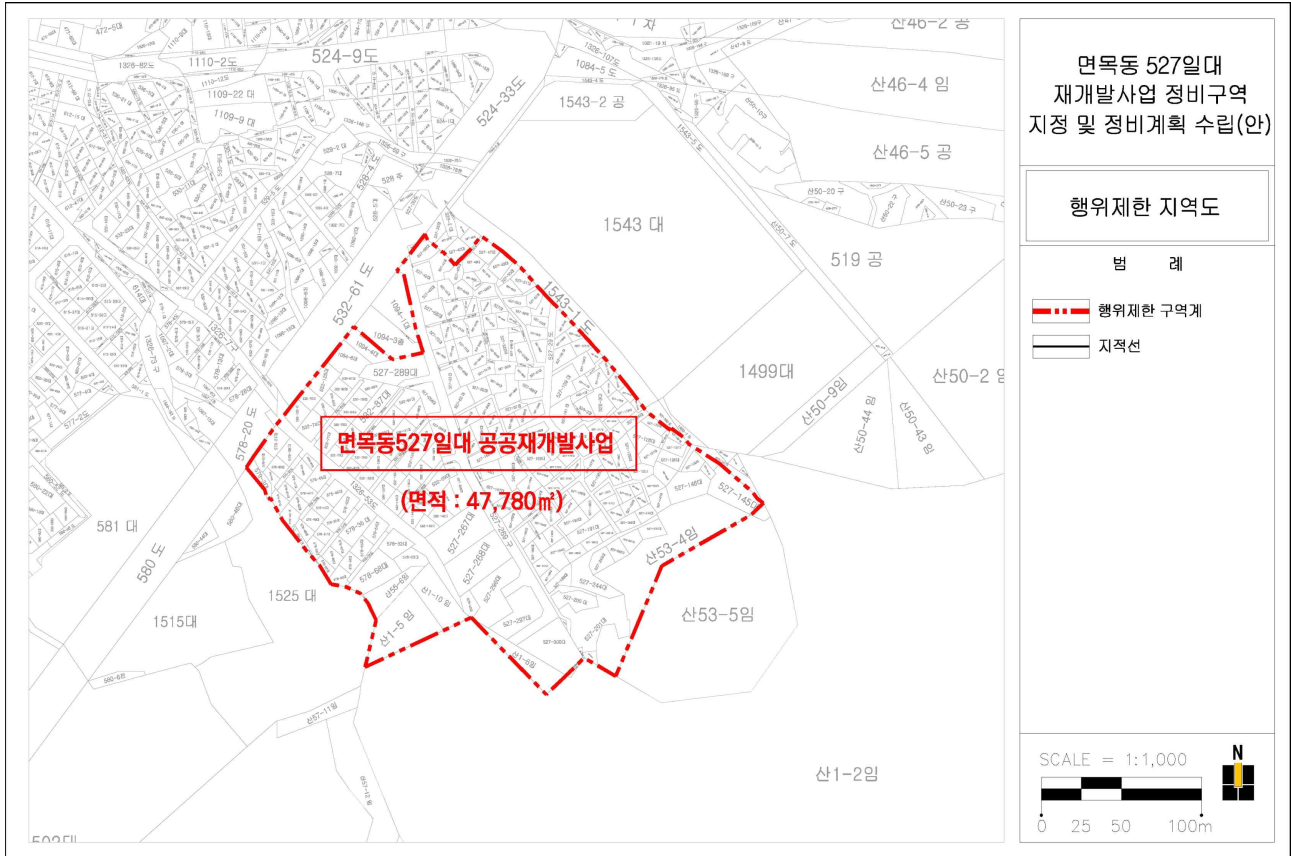
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)

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 (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,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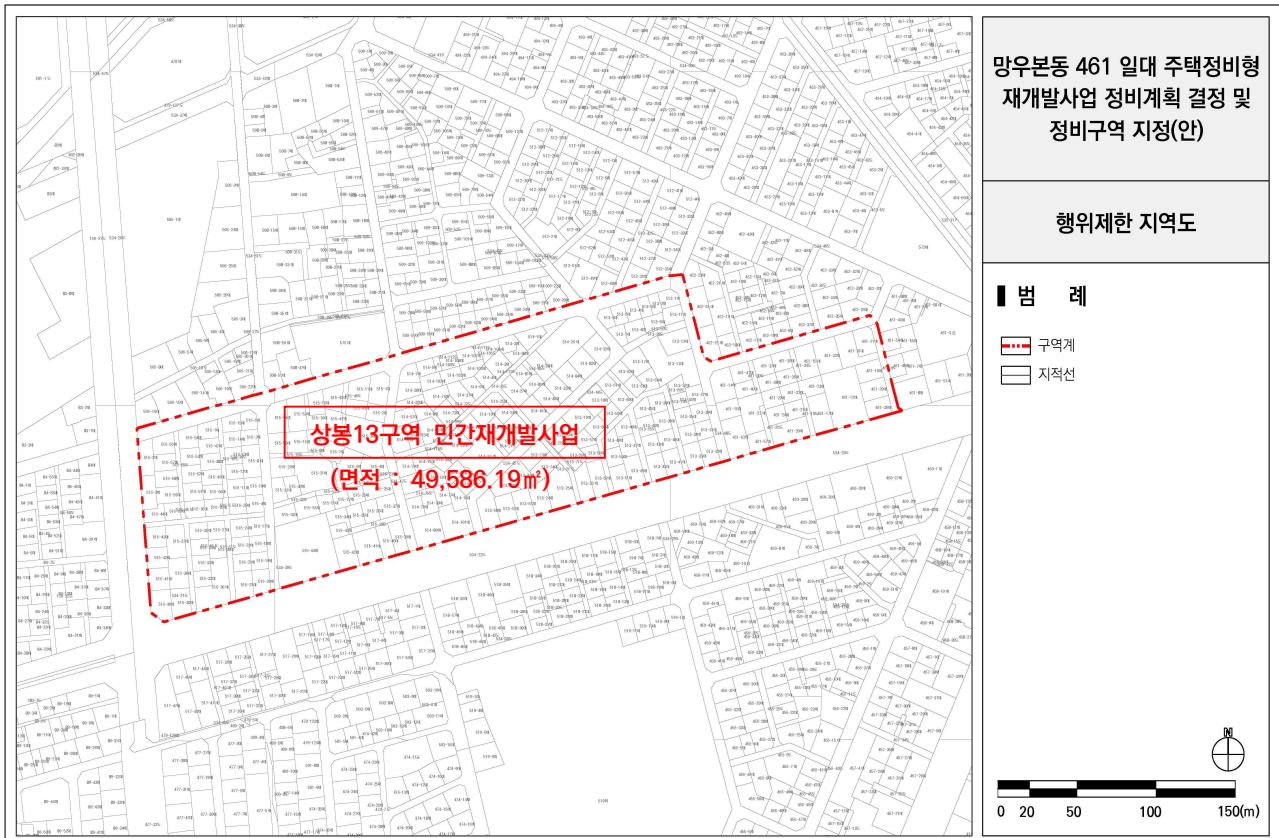
6.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주택개발추진단(☎2094-6892,68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붙임 (행위제한 지형도면)

○ 면목7동 527번지 일원 [가칭]면목동 527일대 공공재개발사업



○ 망우본동 461번지 일원 [가칭]상봉13구역 민간재개발사업



○ 면목5동 172-1번지 일원 [가칭]면목동 172-1일대 민간재개발사업

